

○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포괄 승낙방식용)
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포괄 승낙방식용) (구 하나은행)	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및 포괄 승낙방식용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내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제도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	제 3 조 (업무의 방법), 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, 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 전자매담대	제 3 조 (업무의 방법), 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, 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 전자외담대	용어변경 : 매담대 → 외담대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